2022년 「소상공인 애로사항 현장 지원」 사업 모집 공고

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소상공인 애로사항 현장 지원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5월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소상공인 애로사항 현장지원
- (사업목적)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
- (지원대상)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(지원규모) 72업체
- (지원내용) 전문가 자문 및 경영개선지원금 최대 2백만원 지원
- **(신청기간)** 공고일로부터 ~ 6. 8.(수)까지
- (신청방법)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, 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

2 지원대상

(지원대상)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 *소상공인: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(제조, 광업, 건설, 운송업은 10인 미만)인 사업자

-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 (별첨 참조)
- ②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(가맹점은 지원 가능)
- ③ 휴·폐업 중인 사업자
- ④ 무점포 사업자 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- ⑤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
- ⑥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자
- ⑦ 경영개선지원금 관련 자부담비용(부가가치세) 미수용 사업자
- ⑧ 2020~2021년 「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」 지원업체
- ⑨ 2022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「경영환경개선지원」, 「충남행복가게」, 「당진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지원」 지원업체

3 지원내용

(지원내용) 현장 방문을 통한 전문가 자문 및 경영개선지원금 지원

Ο 전문가 자문

분야	예시	비고
마케팅	- 홍보, 브랜딩, 판로확대 등	
경영진단	- 경영전략, 상권분석, 업종전환, 재무관리 등	
점포관리	- 상품진열, 매장관리, 고객관리 등	
법률지원	- 지식재산권, 세무, 노무, 인허가, 통관 등	
기타	- 생산관리, 품질관리, 프랜차이즈 등	

O 경영개선지원금

- 환경개선, 시설·집기, 홍보·마케팅 중 1개 분야 선택, 최대 200만원 지원

분야	예시	비고
환경개선	- 간판, 닥트, 도배, 타일, 도색, 조명 등	
시설·집기	- CCTV, POS, 키오스크, 좌식→입식 테이블 교체 등	
홍보·마케팅	- 제품 포장, 상표 출원, 신문·잡지 광고, 라이브커머스 등	

< 지원 제외 > ---

- 부가가치세, 한도초과금액, 렌탈비용
- 소모성/자산성/편의성 물품(예: 판촉물, 에어컨, TV, PC, 공기청정기, 소파 등)
- 기타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

4 신청기간 및 방법

(신청기간) 공고일로부터 ~ 6. 8.(수)까지

(신청방법) 아래 중 1개 방법 선택

구분	내용	비고
① 홈페이지	충청남도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(<u>www.cnsp.or.kr</u>)	
② 이 메 일	(<u>424-4000@naver.com</u>)	이메일 제목에 ' <u>현장지원(업체명)</u> ' 기재
③ 등기우편	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, 충청남도경제진흥원 401호 소상공지원팀	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
④ 방문접수	(현장지원 담당자 앞)	

(제출서류)

	제출서류	발급처	
	① 참가 신청서		
	② 추진 계획서	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	
	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		
	④ 사업자등록증명	정부24, 홈택스, 세무서, 주민센터, 무인민원발급기	
필 수	⑤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)		
Ť	⑥ 소상공인 확인 서류 (아래 셋 중 하나 제출) -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고용인이 없는 경우) -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(고용인이 있는 경우)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정부24, 국민건강보험공단, 무인민원발급기	
	⑦ 지방세 납세증명서	정부24, 위택스, 주민센터, 무인민원발급기	
해 당 자	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) -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하락한 경우 가점 부여	정부24, 홈택스, 세무서, 주민센터, 무인민원발급기	

- * 필수서류(7종)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, 서명 누락, 증빙 확인 불가 시 접수 불가
- ** 제출서류는 '22. 5. 1. 이후 **발급분**만 인정

5 절차 및 일정

공고 및 신청서 접수		평가 및 선정자 발표		전문가 자문 및 지원금 사용
공고일 ~ 6. 8.(수)	7	~ 6. 30.(목)	7	~ 11. 25.(금)

6 평가 및 선정

(평 가)

- O 평가방법: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
- O 평가내용

정량 지표	정성 지표
매출, 고용, 사업기간,	지원 필요성, 지원 후 기대효과,
전년 대비 매출 하락도 등	지원사업 취지 부합도 등

(선 정)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시/군별 사업체 수 비율*에 따라 선정

(단위:개,%)

(3.92%)

						(-	= 11 • 11, 70,
합계	천안	공주	보령	아산	서산	논산	계룡
72	21	4	4	9	5	5	1
12	(29.91%)	(5.24%)	(5.26%)	(12.49%)	(7.42%)	(6.71%)	(1.35%)
							•
당진	금산	부여	서천	청양	홍성	예산	태안
5	3	2	2	1	4	3	3

(1.77%)

(4.93%)

(4.15%)

(2.80%)

(2.88%)

(3.54%)

(7.64%)

^{*} 참고: 2019년 기준 시/군별 사업체 수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(선정취소)

- O 지원 제외 대상
- O 충남 외 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
- O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O 담당자 승인 이전 경영개선지원금 관련 과제 수행을 진행한 경우
- O 경영개선지원금 사용 내용을 담당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
- O 허위, 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였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- O 지정된 기간 안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O 증빙서류 또는 완료보고서가 미비한 경우

(변경 및 포기)

- 지원금 사용 방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
- 지원 포기 사유 발생 시 포기신청서 제출

(수행업체 선정)

O 사업자등록증 상 '업태'와 '종목'에 관련 분야가 명시된 충남도내 업체

(지원금 지급)

- O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
- O 제출서류(전자세금계산서, 자부담금 납부확인증 등)가 미흡한 경우 지급 불가(신용카드 영수증 미인정)

(기타)

- O 서류 미제출, 서명 누락 등의 경우 접수 불가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(문의) 충청남도경제진흥원(보부상콜센터)

5 041)424-4000

【별첨1】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평균매출액등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120억원 이하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Α	
19. 광업	В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평균매출액 등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80억원 이하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
33. 정보통신업	J	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33 12 11
35. 부동산업	L (L30 \ 1 \ 1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30억원 이하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l I	
41. 교육 서비스업	P	평균매출액등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10억원 이하
42. 보건입 및 사외복시 서미스입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Q S	
45. 구나(廖廷) 犬 시나 세한 사비그림	_ 3	

【별첨2】

지원제외 업종(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준용)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- ※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 - ©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 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- ※ 기타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